

	<h2 style="margin: 0;">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3-8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9. 08. 01.		
		페이지	1/9	관리 부서	교무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 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의료·보건 현장에 기여하는 Industry 4.0 간호교육 혁신대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직 간호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인 직업소양 함양, 간호수행 역량 탁월성, 간호전문성 개발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 과	입 학 정 원	
	야 간	계
간 호 학 과	33명	33명

제4조(조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무처에 전공심화지원팀을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3 장 위원회 설치

제7조(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①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h2 style="margin: 0;">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3-8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9. 08. 01.		
		페이지	2/9	관리 부서	교무처

- 제8조(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 ① 전공심화 교육과정의 편성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0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나누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위의 1, 2호에 대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14일)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 실습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제12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5월 28일)
 4. 본 대학에서 정하는 휴업일
-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h2 style="margin: 0;">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3-8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9. 08. 01.		
		페이지	3/9	관리 부서	교무처

제13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 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장 입학자격 및 학점인정

제14조(입학자격) 간호계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당해 연도 졸업자는 9개월) 재직할 경력에 있는 자로 한다.

제15조(입학전형) 입학전형 방법은 당해 연도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16조(학점인정)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20학점까지만 인정한다.

제17조(재입학) 자퇴 및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8조(휴학) ① 질병, 가정형편, 특별사유(임신·출산·육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이나 특별사유로 인한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학기시작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은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間は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입학 후 1학기 이내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⑤ 성적취소로 인해 학기 재이수가 필요한 학생에 한해 총장의 허가를 얻어 6개월의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 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 할 수 있다.

	<h2 style="margin: 0;">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3-8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9. 08. 01.		
		페이지	4/9	관리 부서	교무처

- ② 복학은 학기 개시 3주(21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③ 동일학기에 휴학원을 제출한 후 결석허용 한계일 이전에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복학할 수 있다.

제20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 (이하“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21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6.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교육과정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는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산학협력활동(산학공동연구 및 개발, 교육, 산업체 인사 활용 등)과 연계하여 직업 기술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과를 편성한다.

제23조(학급운영) 본 과정은 40명 이하의 별도 학급으로 운영한다.

제24조(수업) 수업은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h2 style="margin: 0;">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3-8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9. 08. 01.		
		페이지	5/9	관리 부서	교무처

②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집중수업) ①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② 집중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학점 이수)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습의 경우에도 15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강의계획서) ① 교무처는 학기 개시 전에 15주 이상의 학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다.

②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개설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주차별 학습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소정양식에 의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학생에게 공지한다.

제29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및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30조(재수강) 수강한 교과목 중 성적평가등급 D+이하 또는 미취득한 교과목을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1조(출석의무) ①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과목당 결석일수가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그 교과목의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 미취득으로 처리한다.

③ 매 학기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일 전까지의 출석을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2조(출석인정) ① 질병,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h2 style="margin: 0;">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3-8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9. 08. 01.		
		페이지	6/9	관리 부서	교무처

- 제33조(결강 및 휴강)** ① 담당교수의 사전연락 없이 수업시작 후 20분까지 출강하지 않은 교과목은 결강으로 처리하고 이를 공지한다.
- ② 결강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강의변경, 보강신청서를 사전에 교무처에 제출하고 보강 실시후 보강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출석체크하는 경우 보강결과보고서는 전자출석체크를 대신할 수 있다.
- ③ 교원이 사전 연락없이 결강하는 경우 교무처에서는 결강에 대한 기안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재차 결강이 발생할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교원과 면담하여 결강에 대한 사유서를 받도록 한다.
- ④ 교무처는 강의시간표에 의한 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없이 휴강 또는 결강하는 강의가 없도록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한다.

- 제34조(출석관리)** ① 교무처는 학기 개시 전 15주 이상의 강의기간이 반영된 출석부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 ② 각 교과목담당교수는 출석부에 해당 학기 출석상황을 집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학기 종료 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제35조(강의평가)** ① 학생은 성적열람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강의평가 미실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된다.

제 8 장 학생지원

제36조(학생 상담 및 진로지도)

- ①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해 다양한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② 학생의 학과 적응 및 진로지도를 위하여 멘토지도교수제, 학과적응프로그램 및 학생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멘토지도교수는 학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2. 학과적응프로그램 및 학생지도프로그램은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심리상담(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프로그램은 대인관계능력향상, 진로탐색,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한다.

제37조(학습역량강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① 학습지원 프로그램 : 기초학습(영어), 경진대회, 공모전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지원

	<h2>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3-8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9. 08. 01.		
		페이지	7/9	관리 부서	교무처

② 취창업 프로그램 :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역량강화 유형의 프로그램 지원

제38조(산학협력활동) ① 학생의 현장 적응활동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공동교육, 산업체 공동연구, 기술지원,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의 산학협력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②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한 학생의 산학협력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 9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39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에 중간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40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1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② 교과목 성적이 60점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 성적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⑥ 재시험 성적은 C+, 재수강 및 계절학기 성적은 C+까지 인정할 수 있다.

	<h2 style="margin: 0;">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3-8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9. 08. 01.		
		페이지	8/9	관리 부서	교무처

[9단계 평점방법]

등 급	배 점	평 점	비 고
A ⁺	95 ~ 100	4.5	
A ⁰	90 ~ 94	4.0	
B ⁺	85 ~ 89	3.5	
B ⁰	80 ~ 84	3.0	
C ⁺	75 ~ 79	2.5	
C ⁰	70 ~ 74	2.0	
D ⁺	65 ~ 69	1.5	
D ⁰	60 ~ 64	1.0	
F	59 이하	미취득	
P		불 계	

제42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제43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미만이거나 미취득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44조(유급) ① 매 학년말 성적 평점이 1.5학점 이하이거나 미 취득과목이 있는 자는 유급 조치할 수 있다.

- ② 유급시 유급학년도의 취득한 점수는 무효처리 한다.

제45조(졸업) ①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전문대학 인정학점 120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장학금

제46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대학발전에 공이 있는 자,

	<h2>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3-8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19. 08. 01.		
		페이지	9/9	관리 부서	교무처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간호능력 향상이 탁월한 자 및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자퇴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정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 및 장학사정위원회를 둔다.

제 11 장 교육품질관리

제47조(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전공심화과정의 전반적인 교육서비스에 대해 교육수요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 도출 등을 통해 교육 품질을 향상한다.

제48조(자체평가) 매년 전공심화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전공심화과정의 교육품질을 관리한다.

제49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